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16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박성훈·백종헌·곽규택

안상훈 • 우재준 • 고동진

조배숙 • 임이자 • 서지영

이상휘 · 조지연 · 박충권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 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

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3항).
- 마.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 바.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호·2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 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 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 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 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

- 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 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를 각각 "제1호부터 제2 호의2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 4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7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그밖에"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자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제출한 자
-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선 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 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

<신 설>

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 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기업등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제2 항에 따른 판정신청 통지의 방 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 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

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

 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

 오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 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 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ㆍ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 른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분야 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 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공개) (현행 제9조의2와 같 음)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생략)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의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

8 11 (12 11)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
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
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
<u>는 행위</u>
3. <u>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u>
ગો1구 H r Ì - ગો∩
<u>제1호부터 제2</u>
호의2까지에
4.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 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 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신 설>

5. ~ 8. (생략) 태조사)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

	제1호부	터 저]2호의2	
	<u>까지에</u>			
19	l2. 제1호부터	제4호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히	H 당하는	= 행위	
	르 소개•알서	 뜻느	유이하	

5. ~ 8. (현행과 같음)

는 행위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 태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 유)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 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u>4</u>	그밖에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 임) ① (생략)
-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 액의 <u>3배</u>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신 설>

<신 설>

- 3. ~ 5. (생략)
-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7. ~ 10.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9조(과

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5</u> 删
제34조(비밀유지의무)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
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
<u>행하는 자</u>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
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 5. (현행과 같음)
6. <u>제17조에 따른</u>
7. ~ 10. (현행과 같음)
제30조(라태로)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신 설>

<신 설>

<u>1.</u> ~ <u>3.</u> (생 략)

② (생 략)

-.

-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신청하지 아니한 자
- 3. ~ <u>5.</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